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의·의결

안전번호 제2018 - 26 - 344호

안 건 명 개인정보 유출사업자 법규 위반사항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이사

의 결 일 2018. 5. 30.

주 문

1. 피심인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등 위의 모든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



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하는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할 것

나.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감독하여야 하며, 시스템 이상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해 최소 6개월 이상 접속기록을 보존·관리할 것

다.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변조되지 않도록 별도의 물리적인 저장장치에 보관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백업을 수행할 것

라. 비밀번호는 복호화 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할 것

3. 피심인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실시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금 액 : 25,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라.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

이 유

I. 기초 사실



피심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고, 피심인의 최근 3년간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 의 매출액 현황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평 균
매출액 (단위 : 백만원)				

※ 자료 출처 :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 (사업개시일 :)

II.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대상

방송통신위원회는 해킹에 의해 12만여 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되었다는 피심인의 개인정보 유출신고(2017. 8. 28.)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privacy.go.kr)에 접수됨에 따라, 피심인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여부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를 현장조사(2017. 10. 24.)하였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 정보’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2017. 10. 24. 기준으로 176,639건의 회원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 의 개인정보 수집 현황 >

구 분	항 목	수집일	건수
회원정보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아이디, 닉네임	'16. 1. 18 ~	176,639건



나. 개인정보 유출 규모 및 경로

(1) 개인정보 유출규모

피심인이 ‘정보’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수집한 회원의 개인정보 약 12만여 건이 해커에 의해 2016. 6월경 유출되었다.

※ 인천지방경찰청에서 유출회원 정보를 육안으로 확인하였으나, 피심인이 유출회원 정보가 저장된 파일은 받지 못하여 정확한 유출건수는 확인 불가

< 유출 정보 현황 >

구 분	유 출 항 목	건 수	중복제거
회원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아이디, 닉네임	약 12만여 건	약 12만여 명

(2) 유출 경로

피심인의 개인정보 유출경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해커는 2016. 6월경 홈페이지()를 SQL인젝션 방법으로 공격하여 회원정보 약 12만여 건을 유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3) 유출 신고

피심인은 운영 중인 홈페이지(,)의 이용자 개인정보가 2016. 6월경 해킹된 것을 인천지방경찰청으로부터 2017. 8. 21. 통보받았고, 회원정보 DB와 대조한 결과 유출사실을 2017. 8. 24. 인지하였다.

피심인은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안 때(2017. 8. 24.)로부터 4일이 경과하여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privacy.go.kr)에 신고(2017. 8. 28.)하였고, 개인정보가 유출된



회원 12만여 명에게는 유출사실을 안 때로부터 15일이 경과한 2017. 9. 8.에 문자 메시지로 개별 통보하였다.

발송결과

※팩스는 12시간, 문자는 최대 26시간 MMS는 최대 49시간 이내 전송결과가 정리 됩니다.
 ※전송결과 93일간 보관되며 팩스 첨부 파일은 2주간만 보관됩니다.
 ※(전송결과 삭제시 복구)가 되지 않습니다.
 ※예약취소는 진행상황에 취소버튼 클릭하는 방법과 [원착 체크박스] 체크 후 [삭제]를 클릭하여야 취소가 됩니다.
 ※발송중(선택이 안됨)일 경우는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성공의 "비전달"은 팩스발송시 "자동응답"이나 "사람이 받을 경우"에 해당되고 요금이 부과됩니다.

전송결과 [발송100건이상] [발송규격안내]

*제목 클릭하시면 성공/실패 세부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송일	제목	도구	송신수	중복	성공(과금)		실패	진행상황
					전달	비전달	(비과금)	
17.09.08 16:10		장문문자	84	0	89	0	5	완료
17.09.08 16:10		장문문자	9,917	102	9,114	0	701	완료
17.09.08 16:10		장문문자	9,094	116	9,141	0	637	완료
17.09.08 16:10		장문문자	9,090	119	9,032	0	739	완료
17.09.08 16:10		장문문자	9,880	137	9,053	0	680	완료
17.09.08 16:10		장문문자	9,887	99	9,080	0	714	완료
17.09.08 16:10		장문문자	9,886	116	9,127	0	643	완료
17.09.08 17:15		장문문자	9,863	129	8,959	0	775	완료
17.09.08 17:15		장문문자	9,883	71	9,124	0	688	완료
17.09.08 17:15		장문문자	9,891	81	9,158	0	642	완료
17.09.08 17:15		장문문자	9,679	110	9,037	0	731	완료
17.09.08 17:15		장문문자	9,877	157	8,950	0	770	완료
17.09.08 17:15		장문문자	9,855	195	8,794	0	866	완료

3. 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 등 사실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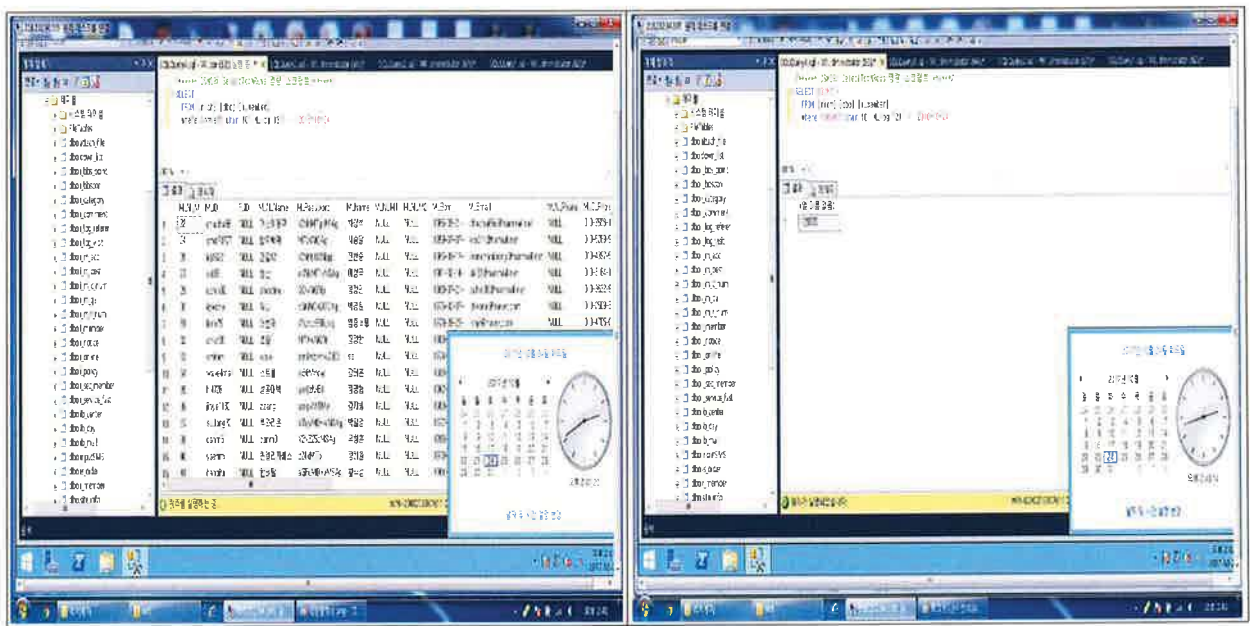
가. 개인정보의 분실 · 도난 · 유출 사실[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을 지연 신고한 행위

피심인은 인천지방경찰청으로부터 운영 중인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2016. 6월경 해킹되었다는 사실을 2017. 8. 21. 통보받았고, 2017. 8. 24. 회원DB와 대조하여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알았으나, 4일이 경과한 2017. 8. 28.에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privacy.go.kr)에 신고하였으며, 개인정보가 유출된 회원 약 12만여 명에게는 유출사실을 안 때로부터 15일이 경과한 2017. 9. 8.에 문자 메시지로 개별 통보한 사실이 있다.

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 등 접근통제{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중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2017. 10. 24. 현재 운영 중인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닉네임, 휴대전화번호 등 176,639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내 회원DB에 저장·관리하고 있는데, 이 중 2016. 10. 24. 이후 1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한 이용자 128,370명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았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바.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방송통신위원회는 2018. 2. 27.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 시정조치(안) 사전 통지 및 의견 수렴’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018. 2. 28. 의견을 제출하였다.

III.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제1호)',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제2호)',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제3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제4호)',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제5호)'의 모든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신고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의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27조의3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해설서'는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제1항의 '지체 없이'에 대해서 정보통신망법에 별도로 규정된 정의는 없으나, 관련 판례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및 근거가 없는 한 즉시'로 해석하고 있다.

나.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제2호)',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제3호)',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제4호)'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은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의 설치·운영(제2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



정보를 처리한 경우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의 저장 및 이의 확인·감독(제1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전송될 수 있도록 ‘비밀번호의 일방향 암호화 저장(제1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6항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에 따라 위 기준 수립·시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5-3호, 이하 ‘고시’라 한다) 제4조제5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제1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제2호)’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제1항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감독하여야 하며, 시스템 이상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해 최소 6개월 이상 접속기록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6조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비밀번호는 복호화 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시 해설서’는 고시 제4조제5항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불법적인 접근(인가되지 않은 자가 사용자계정 탈취, 자료유출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에 접근하는 것을 말함) 및 침해사고(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하여 발생한 사태) 방지를 위해 침입차단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 보안 운영체제(Secure OS), 웹 방화벽, 로그분석시스템, ACL(Access Control List)을 적용한 네트워크 장비, 통합보안관제시스템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어느 경우라도 접근 제한 기능 및 유출



탐지 기능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신규 위협 대응 등을 위하여 지속적인 업데이트 적용 및 운영·관리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고시 제5조제1항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감독하여 개인정보처리를 위한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개인정보의 조회, 정정, 다운로드, 삭제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탐지하고 적절한 대응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불법적인 접속 및 운영, 비정상적인 행위 등 이상 유무의 확인을 위해 i)식별자(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취급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부여된 ID 등), ii)접속일시(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시점 또는 업무를 수행한 시점)〈년-월-일, 시:분:초〉, iii)접속지(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자의 컴퓨터 또는 서버의 IP 주소 등), iv)수행업무(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취급자가 처리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정보)〈개인정보를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등을 포함하는 접속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존·관리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제6조제1항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 및 개인정보취급자 등의 비밀번호가 노출 또는 위·변조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컴퓨터, 보조저장매체 등에 개인정보취급자 및 이용자 등이 입력한 비밀번호를 평문 형태가 아닌 해쉬함수를 통해 얻은 결과 값으로 시스템에 저장(일방향 암호화)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다. 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법 제29조제2항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3항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해당 법 위반 사실과 관련한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 사실(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을 지연 신고한 행위

피심인이 개인정보의 유출 사실을 안 때(2017. 8. 24.)로부터 4일이 경과한 2017. 8. 28.에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privacy.go.kr)에 신고하였고, 개인정보가 유출된 회원 12만여 명에게는 유출사실을 안 때로부터 15일이 경과한 2017. 9. 8.에 문자 메시지로 개별 통보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 등 접근통제(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중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및 접속한 IP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시도를 탐지하는 기능을 포함한 침입탐지시스템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제2호, 고시 제4조제5항을 위반한 것이다.

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의 보관 및 점검(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중 접속기록의 위·변조방지)을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이 개인정보취급자의 DB 및 관리자페이지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처리일시, 처리내역 등 접속기록을 보존·관리하지 아니하고, 접속기록이 위·변조되지 않도록 별도의 물리적인 저장장치에 보관하고 정기적인 백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행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을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



인·감독하지 아니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 및 제3호, 고시 제5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라. 이용자의 비밀번호 저장 시 암호화{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 조치) 중 암호화}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이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개인정보처리시스템(회원DB)에 저장할 때 개인정보가 노출 또는 위·변조되지 않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지 아니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1호, 고시 제6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 또는 별도로 저장·관리하지 않은 행위{정보통신망법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중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피심인이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128,370건을 즉시 파기하거나 별도로 저장·관리하지 아니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 피심인의 위반사항 >

사업자 명	위반 내용	법령 근거		
		법률	시행령	세부내용(고시 등)
	지연 신고	§27조의3①	§14조의2①	개인정보의 유출 사실을 안 때로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신고한 행위
	접근 통제	§28①2호	§15②2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침입차단 및 침입탐지시스템을 설치하지 아니한 행위(고시§4⑤)
	접속 기록	§28①3호	§15③1호·3호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을 작성하여 월1회 이상 확인·감독하지 않고, 6개월 이상 보존·관리하지 아니한 행위 (고시§5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 별도 저장장치 백업보관을 하지 아니한 행위(고시§5③)
	암호화	§28①4호	§15④1호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안전하지 않은 암호화 방법으로 저장한 행위(고시§6①)
	유효 기간	§29②	§16②	1년간 로그인 기록이 없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 또는 별도 분리·보관하지 아니한 행위



Ⅳ. 시정조치 명령

1. 시정명령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등 위의 모든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나. 피심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하는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할 것 2)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감독하여야 하며, 시스템 이상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해 최소 6개월 이상 접속기록을 보존·관리할 것 3)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변조되지 않도록 별도의 물리적인 저장 장치에 보관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백업을 수행할 것 4)비밀번호는 복호화 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할 것

다. 피심인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2.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피심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실시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제1항,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제1항 및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제2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제2호의3·제3호·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별표9] 및 「개인정보보호 의무위반자 과태료 부과 등 처리지침」(이하 ‘과태료 부과 등 처리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9]와 과태료 부과 등 처리지침 제7조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이번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첫 번째에 해당하므로 1회 위반 과태료인 1,000만원을 각 적용한다.

〈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2회	3회 이상
하. 법 제27조의3제1항(법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통지 또는 신고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 또는 신고한 경우	법 제76조 제1항제2호의3	1,000	2,000	3,000
너. 법 제28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 제1항제3호	1,000	2,000	3,000
더. 법 제29조제2항(법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파기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76조 제1항제4호	1,000	2,000	3,000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 등 처리지침 제9조는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인 경우, ▲위반행위가 2개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위반 행위자의 사업 규모, 위반의 동기·정도,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처리지침 제7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 위반 행위가 2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 금액의 50%를 가중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 등 처리지침 제8조는 ▲위반행위의 결과가 과실에 의한 경우, ▲위반행위의 결과가 경미한 경우, ▲위 두 가지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위반 행위자의 사업 규모, 위반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처리지침 제7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까지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심인의 사업규모가 소기업*인 점을 감안하여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제1항 및 제29조제2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기준금액에서 각 50%를 감경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업종별 기준에 따라 평균 매출액 50억원 이하인 사업자(전자상거래, 방송통신업 등)

< 과태료 산출내역 >

위 반조문	기준금액	가중	감경	최종 과태료
§27의3①	1,000만원	없음	500만원	500만원
§28①2·3·4호	1,000만원	500만원	없음	1,500만원
§29②	1,000만원	없음	500만원	500만원
계				2,500만원



다. 최종 과태료

이에 따라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제1항,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2항 위반행위에 대해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V. 결론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제4항(시정명령) 및 제76조제1항제2호의3·제3호·제4호(과태료)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 또는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위 원 장 이 효 성



부위원장

허

욱



위 원

김 석 진



위 원

표 철 수



위 원

고 삼 석

